

沒收金品等處理에 관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2
----------	-------

발의연월일 : 2018. 8. 3.

발의자 : 황주홍 · 김광수 · 김경진
조경태 · 김종회 · 장병완
위성곤 · 이찬열 · 이언주
김중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과 한자가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식 표현인 ‘계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을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目的)”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本法은 國家 保安法의 定한 罪를 犯한 者로부터 没收하거나”를 “이 법은 「국가보 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로, “國庫歸屬命令된 金品을 他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家安全保障을 爲하여 迅速하고 有效適切하게 處理함을 目的으로”를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沒收金品의 定義)”를 “(몰수금품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法에서 没收金品이라”를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로, “各號의1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没收한 武器類”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로, “通信機材”를 “통신기재”로, “裝備 其他 物品과 有價證券”을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으로, “通貨等 工作金品으로서 確定判決에서 没收되거나 國家 保安法 第15條第2項”을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

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으로,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庫歸屬命令된”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北韓傀儡集團”을 “북한괴뢰집단”으로, “構成員”을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北韓傀儡集團에 同調하는 反國家團體”를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로, “構成員”을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前各號에 揭記된 者로부터 指令을”을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로, “活動을 하는 者”를 “활동을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北韓傀儡集團에 同調하여 反國家的인 活動을”을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로, “者”를 “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沒收金品의 處理)”를 “(몰수금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國家情報院長은 沒收金品中 諜報工作上”을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첩보공작상”으로,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金品의 一部”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로, “全部를 國務會議의 審議를”을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로, “大統領의 承認을”을 “대통령의 승인을”로, “直接使用”을 “직접사용”으로, “處分할”을 “처분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國家情報院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使用한 没收金品中 大韓民國貨幣에 對하여는”을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으로, “同額의 金額을 國家情報院 歲出金中에서 控除하여”를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로, “國庫에 納付하여”

야”를 “국고에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沒收金品等處理에 關한臨時特例法</u></p> <p>第1條(目的) 本法은 國家保安法의 定한 罪를 犯한 者로부터 没收하거나 또는 國庫歸屬命令된 金品을 他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家安全保障을 爲하여 迅速하고 有效適切하게 處理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沒收金品의 定義) 本法에서 没收金品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没收한 武器類, 通信機材, 裝備 其他 物品과 有價證券, 通貨等 工作金品으로서 確定判決에서 没收되거나 國家保安法 第15條第2項 및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庫歸屬命令된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北韓傀儡集團 및 그 構成員 2. 北韓傀儡集團에 同調하는 反國家團體 및 그 構成員 3. 前各號에 揭記된 者로부터 	<p><u>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u></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p> <p>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통신기재--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괴뢰집단-----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p><u>指令을 받아 活動을 하는 者</u></p>	<p><u>로부터 지령을-----활동을 하는 자</u></p>
<p>4. 北韓傀儡集團에 同調하여 反國家的인 活動을 하는 者</p>	<p>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자</p>
<p>第3條(沒收金品의 處理) ①國家情報院長은 没收金品中 諜報工作上 또는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金品의 一部 또는 全部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直接使用 또는 處分할 수 있다.</p>	<p>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대통령의 승인을-----직접사용-----처분할-----.</p>
<p>②國家情報院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使用한 没收金品中 大韓民國貨幣에 對하여는 그와 同額의 金額을 國家情報院 歲出金中에서 控除하여 이를 國庫에 納付하여야 한다.</p>	<p>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국고에 납부하여야-----.</p>
<p>第4條(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